
「동정리(소로2-81) 군계획도로 입체교차시설 설치사업」
특정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2023. 11.

I. 일반사항

1. 개요

본 평가기준은 영동군에서 추진중인 『동정리(소로2-81) 군계획도로 입체교차시설 설치사업』의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입니다.

2. 기본원칙

- 가.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기술제안서로 한정합니다.
- 나.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3. 평가방법

가. 1차평가 : 정량적평가

- 1) 1차평가 항목에 대해서 사업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의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

※ 1차평가(정량) 결과 상위 5개 업체만 2차평가(정성) 실시

나. 2차평가 : 정성적평가

- 1) 2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 2) 2차 평가는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시행합니다.
- 3)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평가점수에서 최고점 순으로 제안사를 최종 선정한다.
- 4) 총평점점수가 같을 경우 2차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하고, 2차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5) 그 외 사항은 우리군 결정에 따르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공통사항

- 1)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업체의

제안 공사비 변경은 불가 합니다.

- 2)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 3) 공법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및 오류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신기술·공법이 상기에 해당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신기술·공법으로 채택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비 고
합 계			100	
1차 정량적 (절대) 평가분야	소계		30	1차평가 (사업부서)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대비 공사금액	10	
	시공실적	* 최근 5년간 시공실적(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10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10	
2차 정성적 (상대) 평가분야	소계		70	2차평가 (평가위원)
	현장적용성 및 시공성	* 현장여건 및 적합정도	25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공사기간의 적정성		
	안전성 및 내구성	* 구조적 안전성	25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10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생애주기 측면의 경제성		
	환경 및 경관성	* 향후 폐기물 발생 예상량 등	10	
		*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감점	*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참여자	△10		
	* 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	△5		

II.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30점) : 절대평가

가. 경제성(공사비) 평가(10점)

구 분	배 점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 100%미만	100%이상 ~ 105%미만	105%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 공사비 비율 = (제안신기술·공법의 공사비 ÷ 제안신기술·공법의 평균공사비) × 100
 - 제안신기술·공법의 평균공사비는 최저가 및 최고가를 제외한 공사비의 평균으로 한다.(※ 제안신기술·공법의 공사비 건수가 5개 이하일 경우 모든 제안금액의 평균 적용)
- 해당공법의 공사비는 총괄(부가세 및 자재대 포함) 공사비를 말합니다.
 - 참여 업체는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 부대공 및 가설장비, 가시설, 자재운반, 기타 비용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하며, 건설관련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산출내역서(설계내역서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 단,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시공실적(10점)

구 분	배 점				
	20건 이상	15~19건	10~14건	5~9건	4건 이하
점 수	10.0	9.0	8.0	7.0	6.0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사·공단)에서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것으로, 제안서에서 제안한 공법을 적용한 시공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민간공사 제외)
- 발주기관, 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제원, 특허번호,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미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실적에 대한 제원(규격) 확인도면 및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사실임을 별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이상	A2-이상	①의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이상	10.0
BBB+ ~ BBB-	A3+ ~ A3-	①의 BBB+ ~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 BB-	B+ ~ B°	①의 BB+ ~ BB-에 준하는 등급	8.0
B+ ~ B-	B-	①의 B+ ~ B-에 준하는 등급	7.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2. 정성적 평가 (70점) : 상대평가

가. 평가방법

1) 정성적평가 등급별 배점 및 배분

- 정성적 평가 등급별 배점은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 정성적 평가 등급별 배분

업체수	등 급(배점)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3	1	1	1	-	-
4	1	2	1	-	-
5	1	2	1	1	-

2)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배점					
계	70점						
현장적용성 및 시공성 (25점)	* 현장여건 및 적합정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공사기간의 적정성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5	22.5	20	17.5	15
안전성 및 내구성 (25점)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5	22.5	20	17.5	15
유지관리 (10점)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생애주기 측면의 경제성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10	9	8	7	6
환경 및 경관성 (10점)	* 향후 폐기물 발생 예상량 등 *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10	9	8	7	6

3. 감점사항

가.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참여자 감점(10점)

- 1)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2)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 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 감점(최대 5점)

- 공법명 및 업체명 등 식별가능한 표시를 명기하는 경우 1건당 1점 감점합니다.
- 기술제안서 감점은 평가 최종점수에서 최대 5점 이내로 감점합니다.